

4. 산격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1월 1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8일
- 상정일자 :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 1월 29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2021. 4. 1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격강변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홍병탁)

□ 주요 검토사항

- 위탁사무 : 산격강변축구장 관리·운영
- 시설 개요

시 설 명	구분	2021년 예산지원	위탁시설 개요
산격강변축구장	재위탁	없음 (독립채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탁기관 : 대구광역시 체육회 • 위탁기간 : 2016.4.11.~2021.4.10.(5년) • 소 재 지 : 북구 산격동 1477-1 • 시설규모 : 부지 6,000㎡ • 지원시설 : 축구장 1면 • 준공연도 : 2013년

- 위탁범위 : 산격강변축구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 향후 위탁기간 : 2021. 4. 11. ~ 2024. 4. 10. (3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검토결과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격강변축구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산격강변축구장’의 관리·운영은 ‘대구광역시 체육회’에서 수탁 후 다시 제3자 위탁방식으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다보니, 책임성이 부족하여 시설 개선 및 편의성 확보 등에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체육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탁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 향후, 제3자 위탁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2019년 기준)」에서 ‘라’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바,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취약항목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산격강변축구장 2020년 성과평가 결과]

시설명 \ 등급	가	나	다	라	마
	100~90	89~80	79~70	69~60	59 이하
산격강변축구장				64.73	

- 특히, 일부 단체나 동호회 등에서 특정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50개소(직영 17, 위탁 31, 무상 2)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2020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 두 시설 모두 ‘라’ 등급으로 매우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와 향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p>	<p>현재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로 시설 개선 및 이용객 편의성 확보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향후 제3자 위탁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대책을 마련하겠음.</p>
<p>일부 체육단체가 특정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p>	<p>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음.</p>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